

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88호

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

「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, 원활한 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종료되도록 하되, 신임 시장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새로운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

(심영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9.

발 의 의 원 : 심영석 · 김경희 · 김남수 · 김묘정 · 김상현
김영록 · 김우진 · 문순규 · 박강우 · 박해정
백승규 · 서명일 · 오은옥 · 이우완 · 이원주
이천수 · 전홍표 · 정순욱 · 진형익 · 한상석
한은정 의원(21명)

찬 성 의 원 : 강창석 · 김수혜 · 박선애 · 최정훈 · 홍용채
황점복 의원(6명)

1. 제안이유

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, 원활한 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종료되도록 하되, 신임 시장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새로운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창원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란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조례는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. 다만,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.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

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,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임기가 연장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약칭: 지방출자출연법)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설립 목적
 2. 주요 업무와 사업
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(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장[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1. 출자·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: 신규 지정
2.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·폐지·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: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

■지방자치법

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당선인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
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인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
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
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시·도: 20명 이내
2. 시·군 및 자치구: 15명 이내

⑥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⑦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